

『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6월 1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6월 13일

제1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의 시상부문을 9개 부문에서 전체시민의 귀감이 되는 우수한 시민중에서 시상부문 없이 3명 이내로 수상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상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9개 시상부문을 부문 없이 3명 이내로 축소(안 제3조)
- 시상부문별 삭제에 따른 수상후보자 추천 관련조항 수정(안 제5조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상부문을 없애고 수상대상자를 축소하여 전체 시민 중 가장 귀감이 되는 우수한 시민을 선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의 희소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